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923호)
- 신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959호)
- 윤미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117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331호)
- 고영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754호)

2023.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박규찬

목 차

I . 개 요	1
【박덕흠의원안】	1
【신원식의원안】	3
【윤미향의원안】	4
【윤준병의원안】	5
【고영인의원안】	7
II . 검토의견	9
1. ‘복합재난’ 정의 신설(박덕흠의원안)	9
2. 사회재난 유형에 ‘원자력사고’ 추가(신원식의원안)	12
3. 사회재난 유형에 ‘방사능오염사고’ 또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로 인한 피해’ 추가(윤미향의원안·윤준병의원안)	15
4. 안전취약계층에 ‘정신질환자’ 명시(고영인의원안)	19

I. 개 요

【 박덕흠의원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3. 8. 22.
3. 회부연월일 : 2023. 8.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구호금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붕괴·폭발·화재 등 사회재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방법 등 계획서와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 사용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면 지정 기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집중호우와 이로 인

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어 발생한 사고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성격을 모두 가진 복합재난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재난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금 모금에 제약이 따름.

이에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복합재난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는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다목 신설).

【신원식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원식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3. 8. 23.
3. 회부연월일 : 2023. 8.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처럼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미흡하여 유사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난의 정의에 “원자력사고(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 포함)”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비롯한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윤미향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미향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3. 8. 31.
3. 회부연월일 : 2023. 9.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화재·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되어 향후 오염수로 인한 해양의 방사능오염이 우려되는바,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대비·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방사능오염사고를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윤준병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3. 9. 8.
3. 회부연월일 : 2023. 9.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등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영인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영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3. 9. 26.
3. 회부연월일 : 2023. 9.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장애인의 영역은 포함되어있는 반면, 정신질환자의 영역은 제외되어 있음.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의 경우 재난 시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화재 재난의 경우, 비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0.6명인 것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2명으로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도 포함시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9호의3).

II. 검토의견

1. ‘복합재난’ 정의 신설(박덕흠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복합재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박덕흠의원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가.·나. (생 략) <u><신 설></u> 2. ~ 13. (생 략)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복합재난: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이 복합된 재난</u> 2.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난을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적·인위적 현상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음.¹⁾

한편, 「재해구호법」은 “의연금품”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호를 위한 금전 또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²⁾

따라서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금품의 모집·배분과 관련하여, 현행 체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이 적용되도록 이원화되어 있음.

개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된 ‘복합재난’을 재난의 정의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형화·복잡화·다양화하는 재난의 양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성금과 관련하여 의연금품과 기부금품을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려는 취지로 복합재난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현행법의 목적 및 주요 규정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재난과 관련하여 현행 체계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것은 매년 반복적·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2)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이하 생략)

불연속적·한정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의연금품과 기부금품의 비교]

구분	의연금품	기부금품
근거	「재해구호법」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행안부 고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목적	자연재난 피해자 구호 * 복구비가 아닌 위로금 성격	국제적인 구제사업, 재난(자연재난 제외)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등
대상 재난	자연재난 반복적,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태풍, 호우, 지진 등	사회재난 불연속적, 특정 지역에서 피해 발생 산불, 선박사고, 화재 등
배분 방법	모집자가 각각 모집하여 일괄 배분 * 배분위원회(전국재해호협회 이사회)	모집자가 각각 모집하여 각각 배분 * 모집자별 대상자 선정 → 개별 지급
지급 기준	배분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준(고시/상한액)에 따라 동일피해에 대하여 동일금액 지급 (잔액 이월)	피해 및 모집 규모, 지자체 요구사항, 기존 배분 사례 등을 참고하여 모집·사용계획서에 따라 자체배분 (모집액 전액 지급)
제도적 이점	배분 후 잔액을 보유금으로 적립하여 모금이 저조한 경우에도 공평하게 배분 가능 (투명성, 공평성)	재난 특성·피해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항목·지급기준을 정하여 배분 가능 (자율성, 탄력성, 기부문화 활성화)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의연금과 기부금의 중복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복합재난 신설 시 관련 법령 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피해를 초과하는 배분 결과를 초래하여 기부문화 위축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사회재난 유형에 ‘원자력사고’ 추가(신원식의원안)

신원식의원안은 사회재난의 원인이 되는 사고의 유형에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를 포함한 원자력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신원식의원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u>화생방사고</u>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나. ----- ----- ----- <u>화</u> <u>생방사고·원자력사고(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를 포함한다)</u> ----- ----- ----- ----- ----- ----- ----- -----

현 행	신원식의원안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난”을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³⁾

개정안은 핵무기 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 원자력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예방·대응 및 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현행법 체계에서 사회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한 재난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원자력사고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으로서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은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화생방사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화생방이 ‘화학·생물·방사능’을 아울러 이르는 군사용어라는 점 및 ‘방사능’의 사전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면 원자핵 붕괴나 핵반응으로

3) 주 1) 제3조제1호나목 참조

방출되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원자력은 화생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⁴⁾ 현행 규정과 의미상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원자력사고에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적의 침투나 도발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엄법」이나 「통합방위법」 등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 필요한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에 의한 피해까지 모두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발생 원인에 화생방사고를 포함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중복된다는 점 및 국가 위기관리 체계상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는 안보 분야에 해당하여 재난 분야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전 분야 방사능누출 사고는 화생방사고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보다는 전시 상황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임.

4) 방사능: 라듐, 우라늄, 토륨 따위 원소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일 또는 그런 성질
원자력: 원자핵의 붕괴나 핵반응의 경우에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동력 자원으로 쓰일 때의 원자핵에너지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사회재난 유형에 ‘방사능오염사고’·‘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 추가(윤미향의원안·윤준병의원안)

윤미향의원안은 ‘방사능오염사고’를, 윤준병의원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의 원인이 되는 사고의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임.⁵⁾

현 행	윤미향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제3조(정의) -----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 ----- ----- -----.	1.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	나. ----- ----- ----- ----- -----	나. ----- ----- ----- ----- -----

5) 윤준병의원안은 “방사능 오염수”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임.

현 행	윤미향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 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 는 「가축전염 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 병의 확산, 「미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 로 인한 피해	환경오염사고· <u>방사능오염사고</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한 피해, <u>「농어업재해대 책법」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 한 피해</u>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2. ~ 13. (현행과 같음)

두 개정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보관해오던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기 시작함에 따라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에 방사능 유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현행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른 우리나라의 방사능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그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재난관리 체계로 포섭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앞서 신원식의원안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 화생방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포함하고 있어 방사능사고 또는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의미상 이와 중복되고,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세부적으로 정한 현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⁶⁾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인한 원자력안전 사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법의 사회재난 중 화생방사고에 방사능사고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방사능 오염 사고 또는 피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4. 안전취약계층에 ‘정신질환자’ 명시(고영인의원안)

고영인의원안은 안전취약계층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고영인의원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의2. (생략)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 13. (생략)	제3조(정의) ----- -----.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 -----. 10.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제3조제9호의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 안전에 관한 대책 포함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⁷⁾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재난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개별 여건을 고려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에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모두 포함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뜻하므로,⁸⁾ 정신질환자는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⁹⁾

문 의 처

02)6788-5349

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8)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9) 참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제3조제1호).